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하도록 함.
- 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 과세자료명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의 과세자료명 나목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제1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으로 하며, 별표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7	중소벤처기업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인투자 조합에 출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3월 31일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 및 별표 제1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215-4226